

2013년 하반기 감사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

□ 개 요

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평가를 위하여 1차 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우리 원의 청렴정책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타당성 확인 및 작성자료 보완을 위한 2013년 하반기 감사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임.

□ 관련근거

-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(법률 제10163호, '10.7.1)
-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 제22249호, '10.7.1)
- 2013년 1차 자문위원회 개최('13.5.31) : 반부패 경쟁력평가 추진방안 토의
- 2013년 2차 자문위원회 개최('13.10.25)

□ 자문위원회 토의 결과

- 일시 / 장소 : '13. 10. 25(금) 10:00 ~ 14:00 / 기품원 A회의실
- 위원회 참석자
 - 위원 선정(5인) : 감사원, 국방부, 방사청의 감사관련 업무 유경험자 중 해당기관 추천자(각 1명, 총 3인), 기품원 퇴직자 중 감사업무 근무 경험자(2인)
 - ※ 기품원 감사실장 등 5명 참석
- 토의내용 : 2013년 반부패 경쟁력평가 추진 계획 대 실적
 - 청렴인센티브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
 - 자체감사 활성화
 -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정책 추진의 신뢰성
 - 청렴옴부즈만제도 시행 및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
 -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등
 - 2014년 반부패 정책/제도 발굴(질의 및 토의 시)

○ 토의결과

전반적으로 조직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많은 제도를 시행해 온 것으로 보아 경영 측면에서 조직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돋보임

- 반부패·청렴 정책/제도

· 청렴환경조성 및 청렴문화 확산방안 제도

여러 가지 효용성 있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제도시행이 지속되면 부패행위가 없는 기관으로 발전/유지 가능

· 청렴마일리지제도

직원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좋은 제도로 '13년 시범적용을 통해 지표의 정교화와 운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 관심 필요

· 청렴옴부즈만제도

옴부즈만제도는 정부의 권장사항으로 많은 기관이 도입하는 추세임. 타 기관 적용사례 등을 참고하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완/확대함이 바람직함

· 징계양정

조직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면죄부는 부여해서는 안됨

· 반부패·청렴 자율협력

반부패·청렴업무의 협력을 확대하여 원의 서비스를 받는 업체들과의 협력관계 유지 또는 우리 청렴정책 교육/홍보를 통해 협조를 얻는 방법 모색 필요

- 기타

· 청렴정책/제도 리플릿 작성 배포

지금까지 추진한 여러 가지 청렴제도를 요약하여 전 직원에게 다시 한 번 강조/전파 필요하며 업체에도 배포함이 효과적임

· 제도의 지속적 추진 필요

기품원 자체의 청렴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측면에서 제도 지속

적 추진

· **제도 홍보**

청렴옴부즈만제도, 청렴마일리지제도, 청렴환경조성 및 청렴문화 확산제도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는 것도 조직의 청렴성 향상/유지에 효과가 있음

□ **향후 추진계획**

- 감사자문위원회 결과를 20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실적서 작성에 반영
- 향후 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정립 시 반영 검토. 끝.